

대전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70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병도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3. 선고 2019가합1044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E조합 구좌번호 55번, 56번 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지분양도 ·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조합에게 구좌번호 55번, 56번 지분에 관하여 D과

2016. 8. 9. 체결된 지분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지분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분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및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지분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분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고, 배당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배당금 지급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합계”를 “위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 합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하 ‘H’)”를 “(이하 ‘H’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J을 통해 알게 된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를 “J의 배우자인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네 번째 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J이 M의 중개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6. 4.경과 2016. 7.경 D으로부터 각 1구좌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6. 8. 9.경에는 인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J은 D이 구속된 2016. 11.경 D의 재산상태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J은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J은 2016. 3.경 D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M의 권유로 최초 1구좌를 매수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J은 D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2016.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 중 최초 1구좌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며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J이 피고를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인 J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D과 J을 모두 알고 지내던 M는 소외 조합과 H의 설립 과정에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D은 당초 소외 조합 설립 당시의 발기인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소외 조합 설립 후 M 등을 통해 소외 조합의 구좌를 소유하게 되고 조합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피고는 “J과 D 사이에 소외 조합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분 양도 인증서가 작성된 2016. 8. 9. 이전인 2016. 4. 27.경 및 2016. 7.경이고, 각 그 당시에는 D의 재산상태가 좋은 줄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조합의 설립일자는 2016. 5. 1.경인 점, 소외 조합 설립 당시의 발기인 조합원이었던 P, L, N은 공통적으로 “2016. 4.경 소외 조합의 지분 분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당시 D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외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6. 5.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N이 M를 통하여 D을 소개받았고, 이후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6. 6.경 D의 지분 2개가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 2.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J이 이 사건 각 지분의 양수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6. 6.경이라는 J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6. 4. 27. 당시에는 양도할 지분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를 인증받은 날이 2016. 8. 9.이고, 이 사건 각 구좌의 명의인이 피고로 변경된 것은 2017. 6. 15.이며,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좌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6. 1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분 양수(취득) 시점들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의 남편인 J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17. 7. 12.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H의 대표이사였던 N을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J)은 2016. 3.경 Q로부터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6. 3.경 D에게 도박 자금으로 3,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D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D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I’라는 가스업체이다)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늦어도 2016. 4. 중순경이었다. 위 가게를 염가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D의 재산을 조사하였고, D 소유의 천안시 O빌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D은 소외 조합과 H의 설립을 컨설팅하고 있는 M에게 조합원 자격(지분 소유)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M가 2016. 6.경 자신(J)에게 D이 소유 중인 소외 조합의 지분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갑 제7호증(녹취록)].

그리고 N은 제1심 법정에서 “J은 2016년 말경2) N을 만나 ‘D을 알고 지낸 지가 몇 년 되었고, 자신이 D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노름도 같이 여러 번 한 사이이다. 자신은 노름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D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분만 있다. D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2016. 8. 9. 자 인증서를 N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8. 4.경 이후 L로부터 ‘J이 D으로부터 노름빚 기타 등 받을 돈이 있었는데, D이 아무 것도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여 D의 조합 지분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D은 조합을 설립한 후인 2016. 6. 중순쯤 소외 조합에 가입하였다”고 각 증언하였다(제1심 증인 N의 녹취서 제2~3면).

그렇다면 J과 D의 관계에 관한 N의 위 증언 중 J이 D과 노름도 함께 하면서 노름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관계였다는 부분, 그리고 J과 N 사이의 2017. 7. 12. 자 대화내용 중 J이 2016. 3.경 D에게 도박자금으로 3,800만 원을 빌려주고서 2016. 4. 중순경 D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D은 이를 갚기 위해 2016. 4.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염가에 내놓았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J로서는 2016. 4. 중순 무렵에는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설령 피고가 D의 이 사건 각 지분 중 최초 1구좌를 양수한 시점이 2016. 4. 27.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나아가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J은 빨라야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M의 중개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양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D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던 중 천안시 O빌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받았다는 것인 점, 여기에다가 앞서 본 J과 D의 관계 및 J이 D의 조합 지분을 양도받은 경위에 관한 N의 제1심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J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6. 7.경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J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받을 당시에는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양수할 경우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될 것 역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한편 M는 제1심 법원에서 “J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할 당시, D이 최고급 사양의 외제차를 여러 대 타고 다니고 돈을 풍족하게 써 굉장한 자산가인 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각 지분을 급하게 처분하고자 하여 정상적인 가액인 1억 원보다 적은 8,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D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D의 재력이 풍부했다면 굳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급하게 처분하거나 도박자금을 지속적으로 빌렸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는, “2017. 3. 30.경 R와 S 사이에서 소외 조합의 지분이 1구좌당 8,000만 원에 거래되었고(을 제8호증), 피고 또한 D으로부터 지분을 1구좌 당 8,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지분 양수 시점과 근접한 2016. 9. 7.경에 소외 조합의 지분이 1구좌당 1억 5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소외 조합 지분의 정상적인 가액은 1구좌당 1억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J과 N의 대화에 의하면, J은 자신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M로 하여금 조속히 D의 가게를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M로서는 D이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다섯 번째 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분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진환, 판사 김병식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한다.

2) 2016년 말인지, 2016년 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으나, 2016. 8. 9. 자 인증서를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므로 2016년 말경이라고 보인다.